

## 나. 조례규칙심의회

### ○ 조례규칙심의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한다.
-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됨.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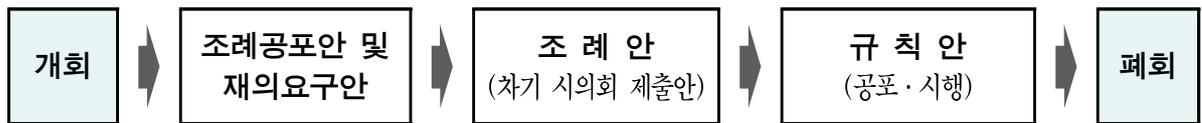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각 실·본부·국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18. 6월 현재 총 36명)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심의 순서 ▶



- 심의회는 매월 또는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심의회 심의안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공포안, 차기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일정을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등과 연동하여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폐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 통상적으로는 시의회 폐회일로부터 1~2주 이내 개최

< 2018년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예) >

- ☞ 제278회 시의회(임시회) : 2018. 2. 21.(수) ~ 3. 7.(수)  
⇒ 조례규칙심의회 : 2018. 3. 16.(금) 개최
- ☞ 제279회 시의회(임시회) : 2018. 4. 4.(수) ~ 4. 13.(금)  
⇒ 조례규칙심의회 : 2018. 4. 27.(금) 개최

- 상정된 안건(조례안, 규칙안 등)은 소관 실·본부·국장이 안건별 제안설명 하며, 안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일괄 제안설명할 수 있다.